

(Ver5.3)

자동납부동의자료 생성 및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3. 6. 30.

본 가이드라인은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동의자료
생성 및 전송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1. 자동납부 동의자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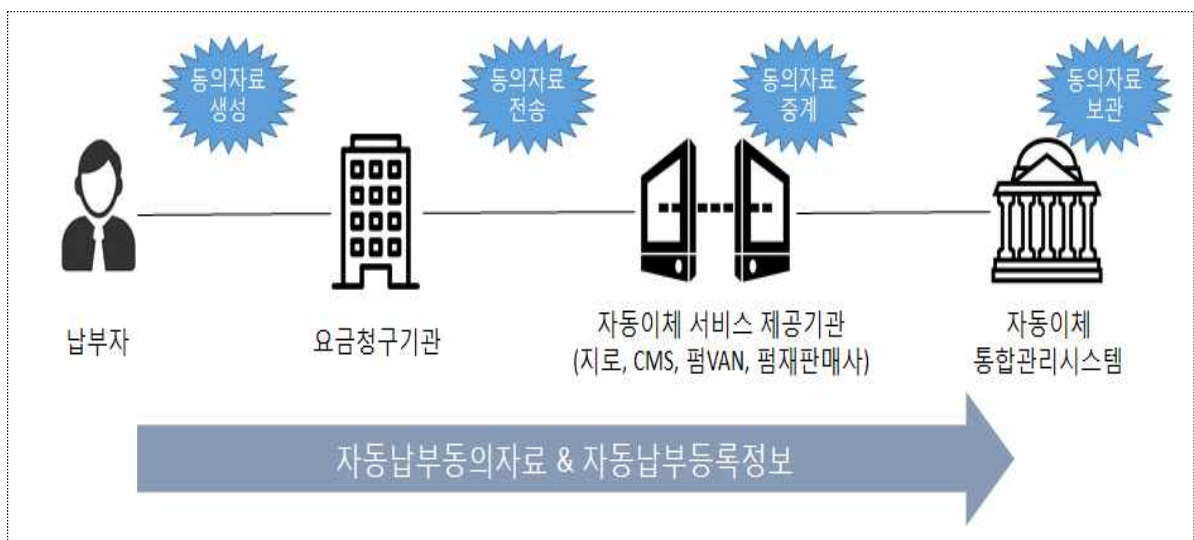
□ 자동납부 동의자료란 납부자가 자동납부 신청 시 요금청구기관에 제출하는 출금 동의내역이 포함된 정보를 지칭

□ 요금청구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생성한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자사의 자동이체서비스(CMS, 지로, 펌뱅킹) 제공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자동납부동의자료 제출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의무사항으로, 납부자의 자동납부 신청 시 요금청구기관은 자동납부 등록정보와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동시 송신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동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에 의거하며, 세부사항은 붙임1(관련 법령) 참조

자동납부동의자료 개념도



II. 자동납부 동의자료 생성

1. 자동납부 동의자료 내 정보내역

□ 요금청구기관은 다음의 납부자 정보내역을 포함한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생성

| 구 분 | | 내 역 | | |
|-----------------|------|---------------------------------------|----------|----------------------------|
| 필수 정보 | | 요금청구기관명 | | |
| | | 납부자 출금은행 | | |
| | | 납부자 출금계좌번호 | | |
| |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
| | | 예금주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대체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번호 | | |
| | | 동의방법 | 서면 | 예금주 날인 또는 서명 ^{주)} |
| | | | 녹취 · ARS | 동의음성 또는 ARS 안내음 |
| 전자문서 | 전자서명 | | | |
| 선택 정보 | | 자동이체 서비스 종류 | | |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 | 신청인명 | | |
| | | 예금주와의 관계 |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주) 단,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로 자동납부 동의서류 상의 예금주 날인 또는 서명란이 삭제된 경우는 예외

※ 요금청구기관은 자동납부 동의와 관련 없는 상기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역을 자동납부 동의자료에 포함할 수 없음

2. 자동납부 동의방법

- 요금청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납부동의방법(서면·녹취·음성 응답시스템(ARS)·전자문서) 중 선택하여, **필수 정보를 포함한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생성**

[서면]

- 필수 정보가 포함된 요금청구기관의 서류 양식에 따라 납부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스캐너·디지털카메라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

※ 서면 샘플양식은 붙임2 참조

[녹취]

- 납부자 본인의 음성으로 필수 정보 확인 및 자동납부동의 여부가 녹음되는 방법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

[음성응답시스템(ARS, Audio Response System)]

- 요금청구기관 고객센터의 ARS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자 본인이 육성 또는 버튼입력을 통해 필수정보를 확인하고 자동납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

※ ARS 상담시나리오 예시는 붙임3 참조

[전자문서]

- 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 일정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통해 자동 납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전자서명 파일, 이미지 파일 등 적절한 형태로 변환

① 공동인증서 기반 전자문서(구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문서)

납부자 본인이 요금청구기관 웹사이트에서 자동납부에 동의하고 이를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전자서명 파일(der)로 생성

② 금융인증서 기반 전자문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편의성·보안성을 개선한 금융인증서를 통해 납부자 본인이 자동납부에 동의하고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전자서명 파일(der)로 생성*

*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문서 생성방식과 동일

③ 대면 실명확인 기반 전자문서(일명 일반전자문서)*

납부자가 대면 상태에서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자동납부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통신기기에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등)한 내역으로, 요금청구기관은 이를 이미지로 파일로 생성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보안요건 충족

④ 민간인증서 기반 전자문서

무결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증서를 통해 납부자 본인이 자동납부에 동의하고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안요건 충족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사업자 인증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를 받은 사업자의 인증서*의 경우 금융회사와 별도 협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요금청구기관은 불임 4의 파일 생성 규격에 따라 전자서명 파일(der) 생성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 사업소개 - 디지털안전본부 - 전자보호 인증·안정 관리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제도 참고

④ 기타 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자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청구기관은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와 우선 협의*해야하며, 붙임 4의
 파일 생성 규격에 따라 전자서명 파일(der) 생성**

* 펌뱅킹 서비스 계약 등에 따르면 요금청구기관은 자동이체 신청서를 금융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야함

** der 이외의 형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동의방법에 따른 전송파일의 형태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

동의방법에 따른 전송파일 형태 및 용량

| 구분 | 형태 | 확장자 | 구분코드 | 용량 | |
|---------------------|-------------------------|--------------------------|--------------------------|----------|----------|
| 서면 | 이미지 파일 | jpg, jpeg, gif, tif, pdf | 1 | 300kb 이내 | |
| 녹취 | 오디오 파일 | MP3, WAV, WMA | 4 | 300kb 이내 | |
| ARS | 오디오 파일 | MP3, WAV, WMA | 5 | 300kb 이내 | |
| 전자 문서 | 공동·금융전자문서 ¹⁾ | 전자서명 파일 | der ²⁾ | 2 | 10kb 이내 |
| | 일반전자문서 | 이미지 파일 | jpg, jpeg, gif, tif, pdf | 3 | 300kb 이내 |
| | 민간전자문서 | 전자서명 파일 | der ²⁾ | 7 | 10kb 이내 |
| 예외 처리 ³⁾ | 템플릿 파일 | txt 등 | 6 | 300kb 이내 | |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한 전자문서

2) 파일 생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은 붙임4에 따르며, der 외의 형식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사전 협의 필요

3) 자동이체서비스 변경(CMS→펌VAN) 등으로 동의자료 수취가 불가능하여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템플릿 처리하는 경우 등

3. 자동납부동의자료 제출의 예외 처리

- 신규 자동납부 등록이 발생하는 업무 거래의 속성 상 납부자로부터의 자동납부 동의자료 수취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청구기관은 관련 사유 등을 명기한 일정 형식의 확인서(이하 '템플릿')를 제출함으로써 자동납부동의자료 제출 대체 가능

템플릿 대체 처리대상

-
- 납부자의 계좌 변경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한 자동이체서비스 전환(지로·CMS·은행카드 → 펌뱅킹 등)이 발생하면서 요금청구기관이 해당 서비스 상의 자동납부 신규 등록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요금청구기관의 이용기관 코드 변경, 일괄정리 및 이관 등 처리과정에서 자동납부 신규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
 - 동의자료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금융회사등” 및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보관하고 요금청구기관은 자동납부 신규 등록만 처리하는 경우
(예) 보험사 방카슈랑스, 퇴직연금상품 등
 - 자동납부 신규 등록 이후에 계좌 잔액부족, 계약 철회 등의 사유로 실제 출금이 이루어지 않아 해당 동의자료를 폐기 처리한 요금청구기관(일부 면제기관에 한함)이 보관실태 점검요청을 수신하여 해당 동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 국고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하는 정부구매카드 발급 시
 - 법인카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카드사와 대형 회원사 간 자동납부 신청 및 출금동의서 징구·관리·보관에 관한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

□ 템플릿 내 필수정보

| 구분 | 내역 |
|------------|---|
| 식별 정보 | 요금청구기관명, 납부자 출금은행, 납부자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동의내역은 제외) |
| 동의자료 부재 사유 | ‘템플릿 대체 처리대상’ 중 해당 사유 기재 |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요금청구기관 앞 관련 문의용 연락처 |

□ 템플릿 처리 형식

- 기존 자동납부동의방법별 전송파일 형태 및 용량 기준에 따라 요금청구기관이 적절히 선택하여 생성

(예) 상기 필수정보를 포함한 텍스트 파일

<예시> 아래의 내용을 txt 등으로 생성하여 자동납부 동의자료로 첨부

| 자동납부 동의자료 제출 대체 자료 |
|--|
| - 요금청구 기관명 : ABC 후원재단 |
| - 납부자 출금은행 : AA은행 |
| - 납부자 출금계좌번호 : 123-4567-890 |
| - 출금계좌 계좌주명 : 홍길동 |
| - 예금주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 : 19940424 |
| - 동의자료 부재사유 : 상기 후원재단은 출금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변경하였고, 대체 자료를 업로드함(출금동의서 원본은 ABC 후원단체 직접보관) |
| - 출금동의 관련 문의 : ABC 후원재단 고객센터 1588-1234 |

- 동의자료 구분코드 6(‘기타’), 동의자료 필드에 생성한 템플릿 파일을 첨부하여 GE12, EI13, FB0110 등의 파일로 송신

III. 자동납부동의자료 전송

- 요금청구기관은 생성한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자동납부등록정보*와 함께 자사의 자동이체서비스 제공기관(CMS, 지로, 펌VAN, 펌재판매사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자동납부등 등록정보는 최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자동이체 서비스에 따라 여타 세부정보는 상이할 수 있음

자동납부등록정보

| 구 분 | 내 역 |
|-------------------|--|
| 자동이체 서비스 종류 | 지로, CMS, 펌뱅킹 |
| 이용기관코드 | 지로 : 7자리 숫자(은행 공통으로 부여) CMS : 10자리 숫자(은행 공통으로 부여, 99로 시작) 펌뱅킹 : 20자리 이내 영숫자(은행별로 부여) |
| 납부자 출금은행 | 3자리 숫자 |
| 예금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출금계좌 예금주의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납부자 출금계좌번호 | 20byte 이내 숫자('-' 등은 삭제) |
| 납부자 번호 |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납부자 번호(특수문자 사용 불가) |
| 납부자 신청일자 | YYYYMMDD 형태의 8자리 숫자 |
| 부가식별번호 |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이 요금청구기관으로부터 전송된 동의자료와 납부자 출금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자동납부 등록내역을 매핑할 수 있는 고유 식별 값 |

※ 단, 자동납부동의자료 일부면제기관으로 분류된 요금청구기관은 생성한 동의자료를 자체 보관하고, 추후 보관실태 점검을 위해 동의자료 식별 값(동의자료의 형태, 동의일자 등)을 전송

- 자동납부동의자료 전송에 관한 기술적 사항은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하는 절차를 따름

붙임1.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 ②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후략)

붙임2. 서면 샘플양식

[지로/CMS/핀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수납기관 및 요금 종류

| | | | |
|-------|--|---------|---|
| 수납기관명 | | |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주소 | | 수납 요금종류 |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 | | | |
|---------|--|----------------------|--------------|
| 계좌주명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
| 금융기관명 | | 출금계좌번호 | |
| 계좌주 연락처 | | | |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 신청인 연락처 | | | |

주) 필요시 납부금액 및 납부일 등 추가

| | |
|------------------------------|--|
|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 수집항목 | [필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
| 수집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
| 보유기간 |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까지 |
| 설명 | 신청인은 위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여부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 | |
|-----------------------------|---|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상기 청구기관(이용기관) |
| 제공항목 | [필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
| 제공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자동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 보유기간 |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까지 (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관) |
| 설명 | 신청인은 위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여부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 | |
|--|--|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 |
|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니 올바른 연락처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인 또는 서명

- 주) 1.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3. ARS 상담시나리오 예시

- 현재 ARS는 자동응답시나리오의 안내에 따른 번호 인입(引入)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담내역 녹음시 자동안내 음성과 번호 입력음이 같이 녹음되어, 분쟁 발생 시 납부자의 출금 동의여부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ARS 녹음 시 **납부자의 동의음성** 또는 **납부자가 입력한 번호에 대한 ARS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상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자동납부동의여부 식별이 가능해야 함

ARS 시나리오 예시

ARS : ***기관의 고객센터입니다. 요금 조회를 하시려면 1번, 요금 납부방법을 변경하시려면 2번을 누르세요.
 고객 : (2번 입력)
 ARS : 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선택하셨습니다. 고객님의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SMS인증번호/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고객 : (생년월일 8자리 입력/SMS인증번호/계좌비밀번호 입력)
 ARS : 출금은행 코드와 출금계좌를 숫자로 입력하신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고객 : (081 75023332200333#)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앞
전송대상정보

| | |
|---|---|
| <p>[납부자 육성 녹취시]</p> <p>ARS : **년 **월 **일생 홍길동 고객님의께서는 ***기관의 요금납부정보를 **은행 75023332200333으로 변경 신청하셨습니다.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를 고객님의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해주세요. 고객 : (예/아니오 응답)</p> | <p>[ARS 안내 녹취시]</p> <p>ARS : **년 **월 **일생 홍길동 고객님의께서는 ***기관의 요금납부정보를 **은행 75023332200333으로 변경 신청하셨습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입력하여 주세요.(혹은, 맞으면 고객님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세요.) 고객 : (1번 입력 또는 생년월일 6자리 입력) ARS :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또는 YYMMDD 인증 완료 되었습니다.) 입력하신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p> |
|---|---|

붙임4. DER 파일 생성 방법

□ 요금청구기관은 RFC2630 SignedData를 DER 인코딩 형태로 생성

- 출금동의원문*, 전자서명값, 인증서 등이 포함된 SignedData를 생성하여 제공하며, 콘텐츠 타입이 signed-data인 ContentInfo를 구현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

* 동의자료 내 포함정보를 출금동의원문(Character-set : UTF-8 또는 EUC-KR)으로 구성

SignedData 구성형식 예시

| 필드 | | 내용 |
|------------------|--------------------------|--|
| version | | 버전정보 |
| digestAlgorithms | |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
| encapContentInfo | eContentType |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유형 |
| | eContent |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내용 |
| certificates | |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
| crls (optional) | | (사용하지 않음) |
| signerInfo | version | 버전정보 |
| | sid |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발급자 DN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일련번호 |
| | digestAlgorithms |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
| | signedAttrs (optional) | 시간정보 등 포함 |
| | signatureAlgorithm | 데이터 서명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
| | signature | 전자서명된 결과값 |
| | unsignedAttrs (optional) | (사용하지 않음) |

※ 전자서명 생성 시 해쉬알고리즘은 SHA(256bits 이상), 서명 알고리즘은 RSA 또는 ECDSA를 사용

□ 자동이체 통합관리 이용기관관리서비스(www.payinfo.or.kr/biz)에서 DER파일을 테스트 및 검증 가능*

* 2021.11.26. 이후부터

<출금동의원문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청구 기관명 : 매일우유 - 납부자 출금은행 : 신한은행 - 납부자 출금계좌번호 : 110238112345 - 출금계좌 계좌주명 : 김계좌 - 예금주 생년월일 : 19980424 -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함 |
|---|